

## 시설별 SI 표준행동요령

농림축산식품부 시설별 SI 표준행동요령

### 도축장

- 1) 도축장 종사자는 발생국 여행 자제, 해외여행 시 검역본부에 입출국 신고 및 입국 시 공항 소독·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준수
- 2) 도축장 소유자는 종사자에 대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자체교육 실시
- 3) 도축장 소유자 및 운전자는 축산차량 등록사항 및 GPS 정상작동 여부 점검(매일)

\*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 미설치(미작동)시 출입금지조치 및 관할 시·군에 통보

####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시 처벌 규정

시설출입차량 미등록 시, 해당 차량 운전자(소유주)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

### 4) 가금 운반차량 관리

- 닭·오리 전용 운반차량에 한하여 출입 허용
- 차량번호, 출입시간, 경유농장 등 기록 확인
- 검사관(검사원 포함)은 하차 전 차량소독과 외부에서 1차 임상관찰 실시하고, 가금류 하차 시 개체별로 2차 임상관찰 실시
- 하차 즉시 차량을 세척·소독(바닥·하체·바퀴 등 차량 전체)하되, 검역본부 권장 소독약으로 소독 실시

#### 가금류 운반차량 세척·소독 실시 요령

- ① 차량 외부의 유기물 제거를 위하여 세차장비 또는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차량 외부(특히, 휴반이·차량바퀴 등) 세척 실시
- ② 세척 후에는 차량 외부에 대해서 고압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소독 실시
- ③ 차량 내부 운전석 및 조수석 등에는 간이소독기를 사용하거나 스펀지에 소독제를 묻혀서 닦는 방법으로 소독 실시
- ④ 운전자 및 동승자는 분무소독 또는 출입자소독기에서 소독
- ⑤ 소독 실시 후 분무차량 운전자는 소독실시기록부에 소독상황 기록·관리

## 5) 일반 출입차량 관리

- 도축장 입구에 설치된 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후 출입 허용
- 모든 출입차량 차량번호, 운전자성명, 출입시간 등 기록 유지
- 종업원 등 출입자 통제·소독
- 도축장 입구에서 필요인원만 출입토록 통제
- 모든 출입자에 대하여 소독 실시(특히, 손·신발 소독)



어리 차량 소독

차량 내부 소독

## 6) 계류장·도축시설 주변소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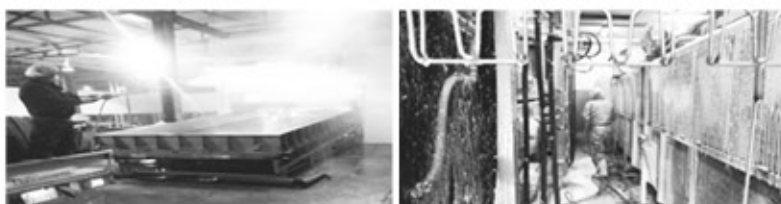
- 작업 전·후 계류장, 도축시설 주변 소독 실시
- 도축시설은 완전히 세척을 한 후 소독 실시
- 도축부산물, 퇴비(액비)는 매일 소독 실시
- 가금류 운반차량과 어리장에 대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되 차량과 어리장에 오염된 유기물 등이 잔류하지 않도록 하며, 운전자 및 운전석 내부에 대한 소독도 반드시 실시

## 7) 도축장을 출입하는 가축운반차량에 대하여는 아래의가축운반차량 방역 소독관리요령'에 따라 관리



도축시설 주변 소독

어리장 소독



계류장 소독

도입장 내부 소독

## 〈가축운반차량 방역 소독관리요령〉

단계	소독관리 요령	
업체·도축장 입차	차량	도축장 입문 시 고압분무 세차로 차량 바퀴 등에 부착된 각종 이물질 제거하고, 출입구에 설치된 터널 소독기를 통과하면서 차량 전체를 충분히 소독
	사람	개인 소독기내에서 개인 소독을 실시하고, 발판 소독조에 신발을 2-3초간 소독
업체·도축장 출차	차량	① 가축운반차량의 경우 어리장을 모두 분리하여 고압세척, 분리가 어려운 경우 분변 등 오물이 남아 있지 않도록 세척하고 분무 소독 실시 ② 출고차량은 세차실 입구에 정차한 후 소독기로 운전석 및 문, 핸들 등을 물방울이 맺힐 정도로 소독하고 어리장내 소독·세척상태 확인 ③ 차량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내 소독약의 충전상태 점검
	사람	① 차량내 비치된 비닐장화, 방역복, 마스크, 장갑 비치 상태 확인 ② 경비실에 비치되어 있는 "소독실시대장"에 소독 확인
농장 도착	차량·사람	① 농장 출입전 비닐장갑, 마스크, 방역복, 비닐장화 착용 ② 차량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로 개인소독 및 차량소독 실시 ③ 농장에 설치된 소독설비를 통해 2차 소독 실시
농장 출발	차량·사람	① 농장 출문 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방역 지급용품 중 오염된 방역용품 및 1회용 방역용품은 지급된 비닐용기에 밀봉 처리한 후 농장 또는 지정된 구역에 폐기 처리 ② 농장 출문 시 개인용 소독기로 손, 의복, 신발 및 차량 내부를 소독하고 차량외부는 농장에 비치된 소독기를 통해 소독 실시
준수사항 (복장 등)	기타	① 지급된 방역용품은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며, 오염 시 즉시 교환 ② 농장 내에서 기급적 농장관리 인원과 접촉하지 않음 ③ SI 발생지역 방역대내(위험지역·경계지역) 도축장 가축 출하 시, 운전자는 가축 방역관 지도·감독에 적극 협조

## 8) 오리도축장

- 다수업체의 임도축을 하는 도업장의 경우 화물차에 상차하는 어리장이 타 업체의 것과 섞이지 않도록 할 것
- 오리 운반차량의 농장 중복방문 금지

\* 농장을 중복하여 방문할 경우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높아짐

- 오리운반차량은 오리농장 전용으로만 사용하고, 닭 등 오리 이외의 가금 이동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

## 부화장

1) 부화장 종사자는 발생국 여행 자제, 해외여행 시 검역본부에 입출국 신고 및 입국 시 공항 소독·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준수

2) 모든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해 출입 통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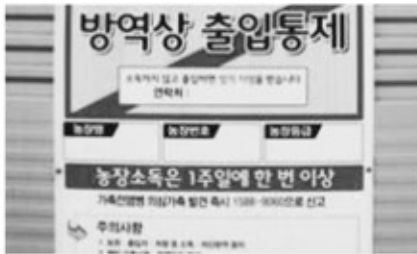
- 모든 출입자는 방문기록 유지(방문일시, 방문 목적, 방문 전 경유지, 방문 후 행선지, 연락처 등 명기)
- 출입구는 하나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고 잠금 상태 유지
-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기록을 일지 형태로 작성 유지
- 의심이 가는 사람과 차량 출입금지 및 방역당국에 신고
- 야생조류 등 접촉방지를 위한 담장, 울타리 상태 점검
- 출입구, 창문, 하수구, 배수구 등에 방서 방충시설 설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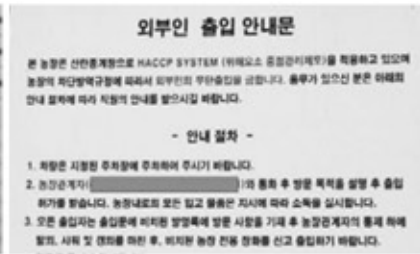
출입구 통제



차량 외부 소독



출입 통제



외부인 출입 안내문



외부인 방문 및 소독 기록



차량 내부 소독

3) 철저한 소독으로 전염병 원인체 유입 방지

- 부화장 내부 전용신발과 의복을 착용하여 외부로부터의 교차오염 방지
- 차량 및 발판 소독조는 바퀴나 장화가 충분히 소독될 수 있도록 운영
- 소독약은 유형에 따라 2~3일 마다 교환하고 소독조 내 오물 수시 제거
- 바퀴뿐만 아니라 차체 내·외부 세척 소독 철저
- 부화장 및 기타 부속시설 출입구마다 발판 소독조 설치
- 난좌, 발육기, 장갑 등 사용물품 소독
- 종사자 외출 및 귀가 시 손발세척
- 일회용 난좌 사용 권장
- 발육실, 발육기, 발생실, 발생기, 초생추 작업실, 부화실의 복도와 통로의 소독은 정해진 절차대로 철저히 이행해야 함.
- 발생실 주변에 쌓이는 병아리 털은 주 1회 이상 청소하여 제거하고 소독 실시



손소독



전용신발 교체



위생복 착용



환복



종란소독



종란실 내부 소독

#### 4) 종란관리

- 종란 운송차량이 하역장소에 도착하면 종란실 근무자가 종란을 종란실로 모두 옮길 때까지 운전자는 운전석에서 대기하고 하차 금지
- 난좌는 1회용 난좌를 사용하고, 부득이 재활용 난좌를 사용할 경우 소독을 철저히 하며 농장별로 구분하여 사용
- 종오리 농장에서 종란을 수거할 경우 산란율이 저하된 농장의 종란은 수거하지 말 것
- 부화기 입란 전,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종란은 입란하지 않도록 하여 부화기 오염 방지



종란 운중소독



종란실 내부 소독 및 청결상태 유지

#### 5) 병아리 분양 관리

- 일회용 종이박스를 사용하고 농장에서 수거하여 재사용하지 않도록 하며, 플라스틱 박스를 사용할 경우 분양 전에 철저히 소독·건조 하여 오염물질이 남지 않도록 할 것

\* 플라스틱 박스를 사용할 경우 분양과정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높음

- 운반 트럭에 대하여 운반 전 후로 소독 실시
- 부화장내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차량의 이동경로를 따라서 하루에 1회 이상 소독 실시

#### 6) 적정 소독효과를 위해 소독약 희석비율 준수

- 성분이 서로 다른 소독약의 혼합사용 절대 금지
- 부식성이 강한 염기제제는 차량 등 알루미늄 재질 부속품 사용금지 및 눈·피부 접촉 금지
- 포르말린제제는 사람·가축에 직접 사용 금지